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3.(금) 10:00 / 배포 2024. 5. 3.(금) 08:3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
-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만 몰래 줄이는 우회적인 가격 인상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 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

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 (별첨)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4405)
		담당자	서기관	송 선 (044-200-44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의2(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이라 한다)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제3조의2 관련)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분 류	식품유형
가공식품	햄 류	가공식품	캔디류	가공식품	땅콩
	우 유		빙과류		견과류가공품
	설 탕		아이스크림류		곡류가공품
	커피(액상제외)		초콜릿류		과채가공품
	치 즈		초코파이(상자)		건면
	식용유		잼류		유탕면
	참기름		베이컨류		카레(커리)
	마요네즈		소세지류		고춧가루
	간 장		만두류(냉동)		물엿
	맛 살		젓 갈		복합조미식품
	식 초		액 젓		가공두유
	복합조미식품		차류(액상제외)		혼합음료
	식 염		과・채음료		탄산수
	참치캔		탄산음료		가공유
	라 면		코코아		김치
	분 유		식물성 크림(커피용)		즉석섭취식품
	유산균발효음료		마카로니		즉석조리식품
	고추장		스파게티		영·유아용 이유식
	된 장		버터류		
	과・채쥬스		마가린류		
	소스류(액상)		벌 꿀		
	소스류(액상제외)		빵가루		
	케 찹		빵 류		
	청국장		시리얼		
	밀가루		식용기름		
	어 묵		와인류		
	국 수		생선통조림		
	두 부		생 수		
	조미김		주 류		
	과 자		드레싱		
	껌		건포류(중량단위)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일용 잡화 및 생활 용품	랩		키친타월
	호 일		부탄가스
	화장지(롤)		살균제
	분말세제		살충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종이기저귀		습기제거제
	생리대		구강청결제
	세면비누(고형)		손세정제
	샴 푸		바디워시
	린 스		염색약
	주방세제(액상)		로션
	칫 솔		선크림
	치 약		립밤
	티슈(상자)		마스크
	위생백		반창고
	가루비누		물티슈
	세탁비누(고형)		면도날
	세탁비누(액상)		건전지
	합성세제(액상)		반려동물 사료
	고무장갑		

[별표2]

중요사항 변경사실 미고지 행위 및 고지방법

(제3조의2 관련)

1. 위반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함
- 용량 등과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는 변경 행위는 제외
-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고지방법

가. 사업자는 상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는 조기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

(1)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

(2)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3) 제품의 판매장소에 게시

나. 위 가.에 따른 고지기간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예 시 >

<table>
<tr><td>포장 표시</td><td colspan="2">“100g → 90g”, “100ml → 90ml” 등</td></tr>
<tr><td>홈페이지 게시</td><td>
</td><td>
</td></tr>
<tr><td>판매장소 게시</td><td colspan="2">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게시</td></tr>
</table>